

서울고등법원

제 7 행정부

판 결

사 건 2016재누1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
원고(재심원고) 임그루
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 A동 103호(읍내리, 한국통신
 사원아파트)

피고(재심피고)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

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
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(정자동)
 대표이사 황창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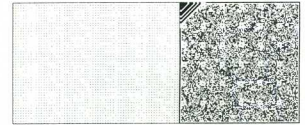
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4재누275 판결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16. 7. 7.

주 문

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2.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(재심원고)가 모두 부담한다.



재심청구취지

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.

이 유

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였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(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재다303 판결 등 참조).

기록에 의하면, 원고(재심원고)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 또는 각하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그 이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.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
재판장

판사

윤성원

윤성원



판사

유헌종


유헌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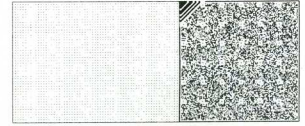


판사

김관용

김관용 





정본입니다.

2016. 7. 8.

서울고등법원

법원사무관 문금선



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(서울고등법원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).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